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1

서 울 고 등 법 원

춘천제2행정부

판 결

사 건	(춘천)2016누426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농업회사법인 A 유한회사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군수
제1심판결	춘천지방법원 2016. 5. 13. 선고 2014구합364 판결
변론종결	2017. 9. 18.
판결선고	2017. 10. 23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3. 8. 2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4,994,960원, 지방교육세 2,758,310원, 농어촌특별세 2,516,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1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고쳐 쓰는 부분

제1심 판결의 이유 중 '3. 나. 2) 나) (2)항 부분(제1심 판결문 5쪽 21째줄부터 7쪽 9째줄까지)'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(2) 위와 같은 법리에 갑 제2, 6, 7호증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(가) 본래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[redacted]군 소재 토지 8필지를 현물출자 받았고, 위 토지들을 총 4,098,450,000원으로 평가하여 C에게 출자지분 819,690좌(1좌 금액 5,000원)를 부여하였다(을 제1호증 참조).

(나)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및 [redacted]군 소재 토지에는 위 현물출자 이전부터 채권최고액 총 합계 3,055,000,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(갑 제6, 7호증 참조). 원고는 현물출자자인 C과 그 자녀인 E, F 총 3명의 사원으로 이루어진 농업회사법인이고, 그 설립 당시부터 C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, 위 근저당권 설정사실 및 그 피담보채무액을 잘 알고 있었다.

(다) 그럼에도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처리방안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현물출자를 받았고, 그로부터 약 50여일 만에 "C에게 부여할 출자지분을 평가하면서 출자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1

상 부동산인 토지들의 가격에서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위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 전부를 출자금액으로 하여 출자지분을 부여하였는데, 이와 같은 현물의 부당평가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 하여야 한다."라는 이유로 위 현물출자계약을 해제하였다.

(라) 이러한 해제 경위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합의해제하지 않고 C의 지분감소조치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위 현물출자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, 합의해제를 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.

(마)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"본래 C과 그 자녀들의 공유인 [redacted]군 D 임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을 변제할 계획이었는데, 위 임야가 매각되지 않아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없게 되어 현물출자계약을 해제한 것이다."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갑 제12,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단순히 C 등이 위 D 등을 매각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을 넘어 원고의 주장 전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.

(바) 더욱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총 3억 원에 불과한데,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 및 그 자녀들은 시가 4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위 D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,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충분히 말소시킬 수 있었다고 보인다. 더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액만도 약 12억 원에 달한다. 그렇다면 [redacted]군 소재 토지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또는 설사 근저당권을 그대로 존치시키더라도 충분히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활동에 사용할 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01

있었다고 판단된다.

(사) 실제로 "[redacted]군 쪽 토지와 [redacted]군 B 쪽 토지에 대한 담보가 전혀 별개로 설정되어 있었는데, [redacted]군 B 쪽 토지(이 사건 각 토지)까지 합의해제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."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원고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, 단순히 "토지면적이 인천 강화군 쪽은 총 합계 31,123㎡, 이 사건 각 토지는 총 합계 17,862㎡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각 토지만을 현물출자 받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."라는 추상적인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.

(아)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.』

3. 결 론

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용빈

판사 박병규

판사 지창구